

FTA 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

강 하 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요약문	1
1. FTA 개요	2
2. 방송·통신 분야 FTA 협상 개관	5
3. 방송·통신 분야 FTA 협상 현황	12
4. 한-미, 한-EU FTA 타결 이후 국내시장에의 영향	16
5. Post 한-미 FTA 정책적 시사점	19

FTA 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

요약문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외에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총 8개 국가(국가권)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TA 전략은 융합 환경 하의 다양한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여 최근 투자 및 성장에서의 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진국들의 앞선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및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 및 개방수위가 낮은 개도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기회가 확보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FTA는 해당 시장 진출을 위한 리스크의 최소화, 제도적 예측가능성 및 우리 사업자의 투자권리 보장을 확보하였다는 면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측 투자자 및 사업자가 해당 시장 진출 시 겪는 차별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 규범적 구제방안을 마련한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리포트는 FTA에서 다루는 방송·통신서비스 의제를 설명하고, 협상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WTO 규범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과 방송 및 통신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약속의 내용을 설명하여 관련 업계 등 당사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및 EU와의 협상 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고, post-FTA 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강 하 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tumesl@kisdj.re.kr, 02-570-4280

*Univ. of British Columbia

국제관계학 학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

*Northwestern Univ. 정치학 박사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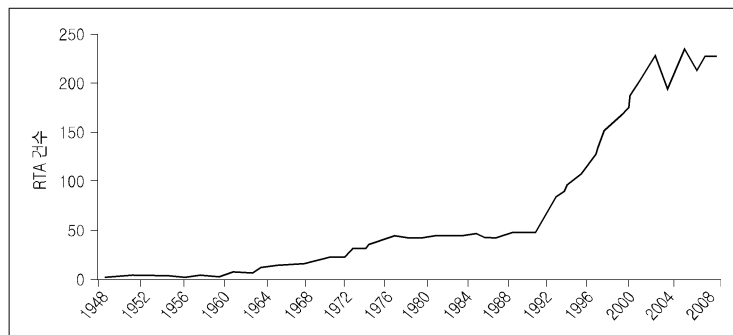
국제협력연구실

1. FTA 개요

◆ FTA 정의

- 세계교역질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서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 (regionalism or bilateralism)로 전환 중
 - 1995년 WTO 체제 출범 후 10여 년이 넘도록 다자무역체제의 질적인 개선이 없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주도의 경제체제에서 EU, 중국 등으로의 경제력 다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수와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입장 차이 및 이해의 조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강도 높은 WTO 다자협상 또는 경제통합을 요구하는 관세동맹·경제동맹에 비하여 협상 당사국에게만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체결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비용이 적어 각광받고 있음
 - WTO 기준 230개가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의 대부분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타결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이에 해당함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수]



자료: WTO

◆ FTA 적용범위

- FTA 협정문의 적용범위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외에도 서비스와 투자의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이 밖에 지적재산권, 위생, 기술장벽,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정부조달, 경쟁정책, 분쟁해결, 투명성, 환경, 노동 등으로 그 협정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FTA는 체결국 간의 협상을 통해 WTO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무역자유화를 보장하고 있음
 - 특히 전자상거래,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 다양한 통상분야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단순한 관세철폐가 아닌 정책의 조화 부문까지를 협정 대상으로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함

◆ FTA 추진 결과

- 외교부의 FTA 추진 로드맵('03. 8)에 따라 그간 총 8건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현재 7건의 협상이 진행 중
- '11년 7월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었으며, 한-미 FTA는 '12년 3월 15일에 발효

[FTA 추진 현황(2012년 3월 기준)]

구분	거대 경제권 및 주요 교역국	시장 교두보	자원 부국 등
발효(8건)	- ASEAN('09. 5) - 인도('10. 1) - EU('11. 7 잠정 발효) - 미국('12. 3, 15 발효)	- 칠레('04. 4) - 싱가포르('06. 3) - EFTA('06. 9)	- 페루('11. 8)
협상 진행(7건)	- 캐나다	- 호주 - 멕시코 - 콜롬비아 - 터키	- GCC - 뉴질랜드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

※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 쿠웨이트,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 방송·통신 분야의 시장개방 수위는 한-미 및 한-EU FTA를 제외하곤 국내법 수준에서 타결

[한눈에 보는 방송·통신 분야 FTA 협상 결과]

협상 대상국가	방송		통신시장 개방
	공동제작협정 체결 여부	방송시장 개방 수준	
칠레	-	기존 국내법 수준	WTO DDA 수준
싱가포르	-	미개방	국내법
EFTA	협정체결	미개방	WTO DDA
ASEAN	근거규정 마련	미개방	국내법 또는 WTO
미국	-	PP에 대한 간접투자제한 및 비지상파에 대한 편성쿼터 완화	간접투자제한 완화 (외국인의제법인 적용 면제)
EU	협정체결	미개방	한미 + 국경 간 공급 일부개방
인도	근거규정 마련	미개방	WTO DDA
페루	근거규정 마련	기존 국내법 수준	국내법

2. 방송·통신 분야 FTA 협상 개관

◆ 통신서비스 협정문 협상

■ 개요

- FT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적용하는 일련의 통상규범을 적시한 여러 협정문과 시장개방 사항을 다루는 양허(유보)로 구성되어 있음
- 협정문은 FTA 당사국 간의 일련의 규범약속을 적시한 문서로서 상대국 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출 시 보장하는 대우, 즉 시장접근(MA, Market Access)¹⁾ 및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²⁾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 Treatment)³⁾ 등을 다루고 있음
- 보통 FTA에서는 서비스 교역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다루는 독립 형태의 협정문이 약 7~8개 존재하며, 국경 간 공급서비스·투자·경쟁·분쟁해결·투명성·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 협정문 등이 이에 해당됨
- 일반적으로 FTA 협상 양국은 통신서비스 협정문의 채택 여부를 논의한 후, 채택이 결정되었을 때 구체적 조항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함

■ 통신서비스 협정문

- FTA의 특징 중 하나는 협상당사국 간의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목표로 양국의 국내 규제에 대한 구체적 규범을 다룬다는 점인데, 특히 자국 사업자의 상대국 시장에서의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대우 확보를 통해 시장 진출 환경 및 관련 비용의 최소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1) 시장접근 의무(Market Access MA):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법인이나 합작회사의 형태 제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한정적 제한조치를 금지하는 의무

2) 내국민대우 의무(National Treatment NT): 협정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의무(내외국인 차별금지)

3) 최혜국대우 의무(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외국에 대한 대우를 협정당사국에 동등하게 부여해야 할 의무(국가 간 차별금지)

- 서비스 교역 규범의 적용대상인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일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산업으로서의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서비스 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여 서비스 교역 일반 규범에 더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자(즉 통신사업자)에 적용하는 일련의 규범을 추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최근의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은 WTO 규범인 ‘통신부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⁴⁾ 및 ‘참조문서(Reference Paper)’⁵⁾의 의무 조항을 더욱 구체화하는 소위 ‘혼합형’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음
 - 혼합형은 통신부속서와 참조문서에서 다루는 일반 규범에 더하여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필수적인 다양한 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담고 있으며, 특히 통신서비스 분쟁 조항과 같이 WTO 서비스 규범이 아직 다루지 못하는 규범도 다루고 있음
 - 최근 체결되는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이 혼합형을 지향하는 이유는 통신부속서 및 참조문서 차원의 의무는 이미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임⁶⁾
- 혼합형 통신서비스 협정문은 주로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많이 보이며, 한-미 FTA 또한 혼합형 통신서비스 협정문을 채택하였음
 - 혼합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WTO 차원의 규범(통신부속서 및 참조문서)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국의 규제 자율성을 시장지향적 규제 프레임에 부합되게끔 당사국의 규제권한 범위 및 대상을 명문화하고자 한다는 것임

4) 통신부속서는 WTO 출범 당시 서비스 무역 규범을 다루는 GATS 협정문의 불가분 요소로서 채택된 일련의 의무인데,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일반적 원칙을 담고 있음

5) 참조문서는 통신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본 통신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쟁활성화 관련 규제 의무를 담고 있는데, 경쟁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정의, 공정 경쟁 규제원칙, 독립적 규제기관의 확립 의무 등을 담고 있음

6)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거의 철폐한 상황이며, WTO, OECD 등 주요 국제포럼에서는 통신서비스 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위주로 논의가 진행 중임

- 혼합형에서는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진입 조건을 결정짓는 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설비공동사용의무, 망세분화의무, 재판매 등 미국 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원칙이 도입되었음
- 참고로 기 체결된 FTA 중 한-싱가포르,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호주 FTA(협상 진행 중)은 미국형 통신서비스 협정문을 채택하였으나, 한-칠레, 한-EFTA, 한-인도, 한-아세안 및 한-EU FTA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제의무를 다루었음

※ 별첨 GATS, 한-미 FTA, 한-EU FTA 통신협정문 규제 수준 비교표 참고

◆ 양허(유보) 협상

■ 개요

- 양허란 ‘협상의 일방이 타방에게 약속하는 각 분야별 시장개방 약속’이며, 양허표에 기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분류는 상품은 품목분류코드(HS), 서비스는 ‘서비스 분야 분류 목록’(W/120)을 기준으로 함
- 방송 및 통신서비스 분야는 아래 표에 기술된 W/120 목록에 해당됨

[W/120 방송·통신서비스 적용 분야]

통신서비스 (C. Telecommunication service)		시청각서비스 (D. Audiovisual service)
(기본)	(부가)	
a. 음성전화서비스	h. 이메일	a.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및 배급 b. 영화상영서비스 c. 라디오TV 서비스 d. 라디오TV 전송서비스 e. 음반 녹음서비스 o. 기타
b. 패킷교환데이터전송 서비스	I. 음성메일	
c. 회선교환데이터전송 서비스	j. 온라인 정보 및 DB 검색	
d. 텔렉스서비스	k. 전자데이터교환(EDI)	
e. 텔레그래프서비스	l. 고도/부가가치 팩스 서비스	
f. 팩스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g. 전용회선서비스	n. 온라인정보 및 DB 처리	
	o. 기타	

- 주: 1) 기본통신서비스: 한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정의상 기간통신역무에 해당됨
 2) 부가통신서비스: 한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에 해당되며, 특히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이에 해당함

- 서비스 협상에서는 서비스 무역의 유형을 다음 4가지 유형(mode)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시장개방 여부를 정함
 - Mode 1(cross-border supply: 국경 간 공급):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각각 자기 나라에 머물면서 통신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서비스만을 공급하는 방식
 - ※ (예) 통신위성을 이용한 국제전화회선서비스 제공, 통신을 이용한 전문서비스 제공(전화·인터넷을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자문) 등
 - Mode 2(consumption abroad: 해외소비): 서비스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자가 머무르고 있는 국가로 이동(여행이나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 (예) 모바일로밍, 여행, 해외유학, 해외진료, 해외에 출장을 가서 법률자문이나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 Mode 3(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 서비스 공급자가 있는 국가에서 서비스 소비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을 이동(=외국인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 (예) 모든 서비스의 경우 가능하며 완전자회사, 합작투자, 인수합병, 대표사무소, 지점 설립 등을 포함
 - Mode 4(movement of natural person: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소비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 (예) 중동 건설 노무자의 건설 서비스 제공, 외국 법률회사나 컨설팅회사의 직원이 출장을 와서 자문서비스를 제공
- 양허·유보방식
 - 일반적으로 시장개방 약속 방식은 양허방식(positive listing)과 유보방식(negative listing)으로 구분됨

● 양허방식(positive listing)

- 양허표에 기재한 시장개방 약속 외의 다른 시장개방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
- w/120 서비스 목록 중 양허표에 기재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시장개방을 약속하며, 개방 약속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일정하게 제한하고자 할 때는 서비스 유형별로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및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제한조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양허표 예시 및 해석]

개방 분야	시장접근(MA) 제한	내국민대우(NT) 제한	추가적 약속(Additional Commitments)
X (CPC 123)	1) None (해석: X분야의 국경 간 공급 관련 MA 제한 없음) 2) None 3) Foreign equity less than 49% (해석: X분야 상업적 주재 관련 49%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1) Unbound (해석: X분야 국경 간 공급 관련 NT 제한 있음) 2) Unbound 3) Non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해석: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MA, NT 제한이 아니며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적 조치의 경쟁제한적 제한사항을 완화·철폐하거나 경쟁촉진적 제도 도입을 약속

※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이동

- X분야가 양허표에 기재되면 X분야는 일단 개방된 것으로 간주하며, X분야와 관련된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MA, NT 제한조치를 기재해야 함

- 한-EU FTA, 한-인도 FTA, 한-ASEAN FTA 등이 양허방식을 채택함

● 유보방식(negative listing)

- 완전 시장개방을 전제로 하나 시장개방하지 않거나, 유보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 및 관련 제한조치만을 유보목록에 적시(한-미 FTA,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등)

- 제한조치를 현재유보목록(Annex I)과 미래유보목록(Annex II)에 등재해야만 NT, MFN, MA, LP,⁷⁾ PR,⁸⁾ SMBD⁹⁾ 등 관련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유보 사례-Annex I (한-미국 FTA)]

분야	통신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대우(제11.3조 및 12.2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19조 및 제59조의2(법률 제 8324호, 2007. 3. 29)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 8. 28) 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 7815호, 2005. 12. 30)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동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중략)

7) LP(Local Presence: 현지거주) 의무의 금지(mode 1, 2, 4): mode 1, 2, 4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에 대표사무소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해야 한다는 등의 현지 주재의무를 부과하지 못함

8) PR(Performance Requirement: 이행요건) 금지(mode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다음과 같은 이행의무 부과금지 i) 수출, ii) 국산품 조달(local content requirement), iii) 수입의 수출에의 연동, iv) 국내판매의 수출에의 연동, v) 기술이전, vi) 생산지를 국내로 한정

9) SMBD(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경영진 및 이사회)의 국적요건 또는 거주요건 금지(mode 3): i) 경영진 국적요건 금지, ii)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사회 과반수를 특정 국적자나 국내 거주자로 요구 금지

- ※ 현재유보(유보목록 I): 국내규제 및 법 수준으로 시장개방을 유보할 경우 현재유보에 기재하며, 기재된 수준보다 강화된 국내규제 개정은 불가
- ※ 미래유보(유보목록 II): 향후 국내규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 미래유보에 기재(예: IPTV 등 방통융합서비스)
- ※ 유보의 해석: 제한조치(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통신서비스에 대해 유보내용에 적시된 관련 의무(내국민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의 적용을 면제함

3. 방송·통신 분야 FTA 협상 현황

◆ 방송 분야

■ 방송시장 개방

- 미디어 산업에서 압도적 경쟁 우위를 가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방송을 포함한 문화산업의 시장개방에는 소극적임
 - 대부분의 FTA에서는 방송 분야가 협상 의제에서 제외(한-EU, 한-인도 등)되거나, 기존 국내법 수준(한-칠레, 한-페루)으로 유지
 - 미국과의 FTA에서는 방송쿼터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PP에 대한 외국인 의제 조항 적용 면제(즉 간접투자 100% 허용) 등 국내법 수준 이상으로 방송시장을 개방함

[국내법과 한-미 FTA 개방 수준 비교]

구분		국내법 개방 수준	한-미 FTA 개방 수준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한도	직접 투자	49%까지 가능	좌 동
	간접 투자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거나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 우 등 국내 법인을 외국인 으로 의제 ⇒ 동 법인의 PP에 대한 투 자가 49%까지 가능	PP에 대한 외국인 의제 조 항 적용 면제(유예기간 3년) ※ 단, 보도·종합편성·홈쇼 핑 PP 제외
편성 쿼터	비지상파 (SO·PP, 위성방송 등)의 장르별 국내편성 쿼터	○ 애니메이션: 35% ○ 영화: 25%	30% 20%
	1개국 편성 쿼터	○ 영화·애니메이션·대중 음악의 경우 각각 수입물 총량의 60%	80%로 상향

■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 대부분의 국가는 방송프로그램의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FTA 차원의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음

- 대부분 국가에서 우리 측의 공동제작 협정 제안을 문화협력 차원에서 수용(한-EU 및 한-인도 등)
- 공동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상호 자국물로 인정됨으로써 쿼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

※ 한-미 FTA에서는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지 않음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 현황]

구분	공동제작 협정문 형태
한-칠레	없음
한-싱가포르	협력챕터 부속서 제2.2절에 근거 - 협력대상으로 TV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명기 - 선언적 효력을 지님
한-EFTA	서비스 챕터 제3.20조에 근거규정 및 서비스 챕터 부속서로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
한-ASEAN	서비스 챕터 제27조 - 관련 부속서의 불가분성 규정 경제협력 챕터 부속서 - 양국의 방송협력의 범위를 개괄적 예시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을 독립된 챕터에서 규정 - 다만 공동제작의 원칙 및 범위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으로 공동제작 협정을 추가로 체결해야 함
한-미국	한국이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미래 유보(※한-미 FTA에서는 공동제작 협정 미체결)
한-EU	문화협력 의정서에 시청각 공동제작의 내용을 포함시켜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효과를 부여
한-페루	협력챕터 내 문화협력 조항으로 FTA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

◆ 통신 분야

- FTA에서 통신서비스 분야 협상은 가급적 국내법 및 WTO DDA 개방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되, 통신 개방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을 경우 전체 국익차원에서 추가 개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부분의 FTA의 경우 상대국 통신시장 개방이 우리의 FTA 주요 목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법 혹은 WTO DDA 수준으로 협상 타결됨
- 반면,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미국, EU 등 선진 경제권과 협상 시 외국인 투자 허용 한도 등 통신시장 개방 문제가 주된 협상 의제로 대두되었음
 - 한-미, 한-EU FTA에서는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총량을 100%로 완화하였으며(외국인 의제법인 적용을 면제), 한-EU FTA에서는 국경간 공급 규제 일부를 추가 완화함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수준 비교표]

구분	국내법 및 WTO DDA 개방 수준	한-미 FTA 개방 수준	한-EU FTA 개방 수준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	직접 투자	49%까지 가능	좌 동
	간접 투자	- 국내법 100%/WTO 80% - 외국인 의제 적용: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고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 국내 법인을 외국인으로 의제하고 동 법인이 보유한 통신사업자 지분을 직접투자한도 49%에 포함	- 100% • 공익성 심사 통과 시 외국인 의제법인 적용 면제(유예기간 2년) ※ 단, KT, SKT 제외

구분	국내법 및 WTO DDA 개방 수준	한-미 FTA 개방 수준	한-EU FTA 개방 수준
국경 간 공급 제한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 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 우, 국내사업자와 상업 적 협약을 체결해야 함	좌 동	국제 위성전용회 선서비스 중 방 송 중계 부문에 한해 상업적 협 약 체결 의무를 면제(국내 지점 간 위성 중계는 제외)

4. 한-미, 한-EU FTA 타결 이후 국내시장에의 영향

◆ 한-미 FTA

■ 방송 분야

- PP 분야에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까지 허용되고, 국내물 편성쿼터 일부가 완화됨으로써 중소 PP 또는 독립제작사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미디어 시장 재편에 외국계 PP의 활약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비한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기반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통신 분야

- KT와 SKT는 간접투자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타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한정하여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경영권 문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SK브로드밴드(SKT 50.56%, '10년 말 기준), LG유플러스(LG, LG상사, LG유플러스 지분 총합 46.6%, '10년 말 기준) 등 국내 모회사의 지분율이 높아 외국통신사의 경영권 획득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외국인 의제법인을 통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시장 규모 및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음

◆ 한-EU FTA

■ 방송 분야

- 방송 분야는 EU 측 요청에 따라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시청각물 공동제작 관련 문화협력 의정서는 FTA에 포함됨

- 이에 따라 한-EU FTA 발효 시 EU 27개 회원국과 공동제작된 방송 콘텐츠는 한국과 EU 역내에서 상호 국내물로 인정받게 됨
- 한-EU 공동제작물은 EU 27개 회원국의 국내물로 취급되어 해당 시장 진출에 매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까지는 공동제작물의 성과가 다큐멘터리 등 시장성이 그리 크지 않은 분야에서만 이루어져 공동제작물 형태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은 아직 타진되지 않은 상황

[2007~200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한 방송콘텐츠 공동제작(15편, 15.7억)]

구 분	방송사명	제작프로그램	공동제작국	지원금
2007	중앙방송(주)	- 아시아의 해적을 찾아서	싱가포르/ Oak3Film	1억
	KBS	- 아시안 피치(The Asian Pitch) - Subak(말레이시아) - 말레가온의 슈퍼맨(인도) - 토라자의 미라도둑(인도네시아)	싱가포르/ Media Corp	1.2억
	EBS	- 피오르드와 리아스	노르웨이/NRK	1.3억
2008	KNN	- 아시아의 야시장	싱가포르/ Off The Fence Singapore	1억
2009	한국 HD방송	- 아시아 관광허브-테마파크로 열다 1부: 그들만의 세상, 아시아 테마파크 2부: 관광아시아, 꿈을 설계하라	싱가포르/ Oak3Film	1.2억
		- 아시아의 미래, 바이오(BIO)를 주목하라 1부: 新콜드러시,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가다 2부: 바이오(BIO)유토피아, 아시아를 바꾸다	싱가포르/ Ochre Picteres	1.1억
	온미디어	- 스타일 아시안	싱가포르/ Oak3Film	2억

구 분	방송사명	제작프로그램	공동제작국	지원금
2009	EBS	- 백색열전-불타는 북극 1부: 원시북극의 위기 2부: 남획의 그늘 3부: 신 냉전의 그림자 4부: 영토 분쟁의 서곡 5부: 북극항로를 향해	노르웨이/NRK	1.2억
	디지털 조선일보	- 프로젝트 글로벌 인턴십, 싱가포르&코리아	싱가포르/ Red Dawn	1.4억
	푸드TV	- 예비 셰프들의 한·싱 음식 문화 체험기	싱가포르/ Kaiiten Coom.	1.5억
	KNN	- 소금과 염장	아이슬란드/ Profilm	1.3억
- 동양의학		스위스/LAVA	1.5억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 분야

-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한-미 FTA 수준과 동일
- 다만, 기간통신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과 관련해서는 위성통신서비스 중 위성전용회선을 이용한 한-EU 방송사 간 콘텐츠 중계에 한정하여 개방함으로써 대부분 국내 지점 간 연결에 이용되는 무궁화 위성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였음
 - ※ 국내 주요 위성통신사업자의 전체 매출은 연간 약 1,300억 원('08년 기준) 규모이며, 국제 위성전용회선 서비스 중 방송중계 부문은 약 6%(82억 원) 수준
- 동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위성사업자의 매출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유발 및 방송사의 위성신호 직접 수신으로 국내 방송사에게는 통신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5. Post 한-미 FTA 정책적 시사점

◆ 방송·통신사업자의 해외진출의 현실

- 일반적으로 서비스 분야 해외진출은 매우 어렵고 위험요소가 많은데, 그 주된 이유는 진출국 내 투자, 법인 설립, 인허가 획득, 영업망 구축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
 - 특히 언어·문화적 감수성 차이 및 해당 국가의 규제는 시장에서의 안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방송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실적은 아직 초기단계인 것으로 평가됨
 -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 내 한국 프로그램의 방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2005년 571편의 한국 드라마가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276편 만이 심의를 통과함¹⁰⁾
 - 우리가 관심을 갖는 아시아권 국가들은 대부분 수입 총량제, 프라임타임 편성규제 등 한국 콘텐츠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보유
 -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자들은 현지 수입배급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출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시장에 진입하여 콘텐츠 유통사슬 전체를 장악하는 안정적 수익모델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음
-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2000년도 초기의 해외진출 시도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음
 - SKT, KT 등이 미국·중국·베트남 등에 지분참여 형태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모두 철수함
 - 국내 굴지의 ISP(네이버, 다음)도 해외진출 시도 실패 후 국내시장에 안주하고 있음

10) KOCCA, 중국 광전총국 자료 재인용

- 현재 모바일 게임, 컬러링 등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진출 시도만 조금 있음

◆ FTA를 통한 해외진출 리스크의 최소화

● FTA는 WTO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 교역국 간 규제환경의 조화를 통해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 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즉, FTA 당사국은 자국의 법제도를 FTA 협상결과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하며, 이는 곧 서비스 사업자들의 상대국 시장 진출 관련 리스크·비용 감소 및 사업 환경의 예측가능성의 제고로 이어짐

● 특히 FTA를 통해 우리 측 투자자 및 사업자가 해당 시장 진출 시 겪는 차별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 규범적 구제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향후 FTA의 제도적 운영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시장은 몇 년간 정체기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의 ICT 환경 변화(특히 모바일 플랫폼 환경)로 국내시장에만 안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은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

● 방송서비스의 경우 한류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측 사업자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의 활용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우리 측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예컨대, 기체결 FTA 상대국이 FTA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해당국의 방송·통신 분야에의 시장진입 제약요소 및 비관세 장벽들을 조사하여 정부차원에서 해소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교역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내적으로 통상협정의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의 수립 및 민간부문의 의견 전달 통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만큼 해당 국가들의 시장장벽을 해소 및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 강만석·이재민 (2007), 『중국 방송콘텐츠 시장과 규제정책 연구』, KOCCA.
- 강하연 (2011), 『한중 FTA 심층연구: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강하연 외 (2009),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통상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_____ (2010),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규제제도 조사자료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건흥리서치앤컨설팅 (2007), 『IT통상환경개선을 위한 조사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 (2010) “한미 및 한EU FTA 설명자료”.
- 외교통상부 (2010), 『중장기 FTA 추진전략』.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2010),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0), 『해외한류동향 보고서』.
-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www.fta.go.kr
- 중국 광전총국 홈페이지 <http://www.sarft.gov.cn>
-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www.kocca.kr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Conex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
<http://conex.kisa.or.kr>

〈별첨 1〉 GATS, 한-미 FTA, 한-EU FTA 통신협정문 내용 비교

조항 구분	GATS	한-미 FTA	한-EU FTA
범위	부속서 2조 참조문서 도입부	14.1조	7.27조 1항
정의	부속서 3조 참조문서 도입부	14.24조	7.27조 2항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 및 사용	부속서 5조	14.2조	
공중 통신사업자의 일반 의무			
상호접속		14.3조 1항	7.31조 1항
상호접속으로 취득한 정보의 유용 금지			7.31조 2항
번호이동성		14.3조 2항	7.32조
동등다이얼		14.3조 3항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가적 의무			
타방당사국 사업자에 비차별대우		14.4조	
경쟁보장장치	참조문서 1조	14.5조	7.30조
재판매		14.6조	
망요소세분화(UNE)		14.7조	
상호접속	참조문서 2조	14.8조	7.31조 3항~5항
전용회선서비스의 공급		14.9조	
설비병설		14.10조	
전주, 관로, 도관, 설로설비포설권		14.11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14.12조	
부가통신서비스 공급조건		14.13조	
독점			
개도국을 위한 기술적 협력	부속서 6조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	참조문서 5조	14.14조	7.28조
보편적 서비스	참조문서 3조	14.15조	7.34조

조항 구분	GATS	한-미 FTA	한-EU FTA
허가절차	참조문서 4조	14.16조	7.29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참조문서 6조	14.17조	7.33조
통신 및 관련 트래픽데이터의 비밀성			7.35조
통신규제기관의 집행권		14.18조	
국내 통신 분쟁 해결 절차	참조문서 2.5조 (상호접속에 한정)	14.19조	7.36조
투명성	부속서 4조	14.20조	
공중통신전송망 접속 관련 표준화			
통신 기술표준에 관한 조항	VI:5조(서비스 기술표준 일반에 적용)	14.21조	
규제적용의 보류		14.22조	